

#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 년 03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타임기술  
대 표 이 사 :       주 양 효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메카동 813호  
                  (전 화)055-281-6540  
                  (홈페이지)<http://timet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황동환  
                  (전 화)055-281-6540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 19조에 의하여 제 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1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 메카동  
912호 본점 회의실

3.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4.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4기 (2021. 1. 1. ~ 2021. 12. 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중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주양효 재선임의 건

- 제3-2호 : 사외이사 권광현 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5. 의결권 대리 행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timett.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관련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식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7. 유의사항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03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50 메카동 813호  
주식회사 타임기술

대표이사 주 양 효 (직인생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권광현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	2021-01-21	임시 추종을 통한 특별 결의 (회사 정관 수정의 건)	찬성
2	2021-02-16	제3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제3기 재무제표 승인)	찬성
3	2021-09-06	1. 등기임원 선임 목적의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결의 2. 임시 주총 개최를 위한 명의개서 정지 3.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채택	찬성
4	2021-10-01	1. 2021년 10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제 1호, 2호 의안인 선임 사내이사, 감사후보자 확정 의 건	찬성
5	2021-12-09	1. 스톱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건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	400,000,000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 포함 보수한도)	연 6,000,000	연 6,000,000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상기 해당사항 없음.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상기 해당사항 없음.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국내 방위산업은 정부의 전력증강계획 및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 70년대 기본병기를 역설계하여 개발하는 모방기단계부터 시작하여 ’ 80년대 선진국 무기를 개량 개발하는 성장기, ‘ 90년대 고도정밀무기를 개발하는 도약기 단계를 지나 현재는 일부 세계수준의 첨단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선진권에 진입하는 등 불과 40년 만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전력증강 정책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대치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자주국방의 시급성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고, 이제는 차기전차 K2, 고등훈련기 T-50 계열, 차기자주포 K-9, 차기복합형소총 K-11,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등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22~ ’ 26 국방중기계획 국방부 ]

(단위 : 조원, %)

구분	대상기간						중기 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국방비	52.8	55.5	59.3	63.4	67.0	70.0	315.2
증가율	(5.4)	(5.0)	(6.9)	(7.0)	(5.6)	(4.4)	(5.8)
방위력개선비	17.0	17.5	19.0	21.2	23.6	25.4	106.7
증가율	(1.9)	(2.8)	(8.8)	(11.7)	(11.2)	(7.2)	(8.3)
전력운영비	35.8	38.0	40.3	42.2	43.4	44.6	208.5
증가율	(7.1)	(6.0)	(6.0)	(4.7)	(2.8)	(2.9)	(4.5)

이러한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에 따라 무기체계의 개발에서부터 배치, 운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군수지원 사업 또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이 미진할 경우, 운용/유지간 정확한 소요

분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비 및 보급 업무 상 문제를 야기하여 실제로 과도한 운용/유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체계 개발 시 효과적인 종합군수지원 체계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주)한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과 같은 완성형 무기체계 개발업체에서 사업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분야는 무기체계의 보안 특성상 종합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정체와 배타적인 협력관계로 인해 신규 업체가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당사는 종합군수지원 분야에 새로운 신규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전장형 무기체계 및 수출형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외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규격 S1000D를 연구 및 적용하여 항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당사를 비롯한 한성S&I, 뉴빛테크놀러지 등 많은 종합군수지원 업체가 있지만, 현재 국제규격 S1000D 및 GEIA SPEC 기반의 ILS 개발 실적은 당사가 업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현재 많은 무기체계 개발업체에서 국제규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무기체계 종합군수지원 분야에서 신규 규격을 채택하기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 당사는 자체의 기술력과 지속적인 국제규격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외 방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상의 기술력으로 품질과 생산성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종합군수지원 기술 ]

구분	보유 기술
ILS 요소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료 분석 기술(도면, 3D 프로젝트, SPEC, 연구개발 각종 자료 등)</li> <li>- 공학적 분석기법(LOADERS II, OASIS II, Windchill, Relex 등)</li> <li>- MIL-SPEC, GEIA-STD-0007B, S3000L, DE-STAN-00-60</li> <li>- 보급지원, 지원장비, PHS&amp;T 소요분석 프로그램 운용 기술</li> <li>- EAGLE 솔루션 운용(국내 유일)</li> <li>- EAGLE LSAR, Oracle, CSDB 운용 기술</li> </ul>
기술교범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규격에 적용한 기술교범 제작(육해공)</li> <li>- S1000D 규격을 적용한 CSDB 운용 기술(책자형 기술교범, IETM 연동)</li> <li>- PTC 사 기술교범 개발 시스템 운용 기술</li> <li>- Arbortext Editor/Arbortext IsoDraw/Arbortext Publishing Engin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ytheon Company사 EAGLE 운용 기술</li> <li>- S1000D기반 EAGLE EPS, EAGLE Web</li> </ul>
전자식 기술교 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1000D 기반 IETM S/W 보유(저작권 보유)</li> <li>- 국내 최초 국제규격 S1000D 기반 Class 5</li> <li>- 웹 서비스 및 단일형 DB 운용</li> <li>- 모바일 기능 지원</li> </ul>

[ 기술번역 동시번역 지원시스템 ]

시스템 기능	효과
번역자간 번역 DB 실시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역 품질 향상</li> <li>- 번역 소요 시간 절감</li> </ul>
번역 DB 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수 시간 절감</li> <li>- 감수 반영 시간 절감 및 감수 반영 오류 예방</li> </ul>
자동 Q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역 DB와 다른 문장 식별</li> <li>- 수치 입력 오류 방지</li> <li>- 비승인 용어 사용방지</li> <li>- 미번역 문장 식별</li> </ul>
보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별로 권한 부여</li> <li>- 보안성 및 통제 기능</li> </ul>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프로젝트 현황 파악</li> <li>- 체계적 사업 관리</li> </ul>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1) 종합군수지원(ILS)사업부

국내 방산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지상방산, 한화디펜스, 두산모트롤, 현대로템, 효성중공업과 같은 완성형 무기체계 개발업체에서 사업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분야는 무기체계의 보안 특성상 종합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정체와 배타적인 협력관계로 인해 신규 업체가 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타임기술은 종합군수지원 분야에 새로운 신규 기술을 접목



하여 미래 전장형 무기체계 및 수출형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외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규격 S1000D를 연구 및 적용하여 항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타임기술을 비롯한 한성S&I, 뉴빛테크놀러지 등 많은 종합군수지원 업체가 있지만, 현재 국제규격 S1000D 기반의 ILS 개발 완료 실적은 저희 타임기술과 한성S&I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무기체계 개발업체에서 국제규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무기체계 종합군수지원 분야에서 신규 규격을 채택하기 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 타임기술은 자체의 기술력과 지속적인 국제규격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외 방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상의 기술력으로 품질과 생산성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군수지원분석(LSA) 개발 사업

공군의 수리온(KUH) 헬기 기반의 수출형 헬기, 소형민수헬기(LCH), 한국형 전투기(KF-21), 육군의 K21 전투장갑차, KAAV 등 다양한 국방 및 민수분야 사업을 수행하여 군수지원분석(LSA)에 대한 노하우와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군수지원분석(LSA) 국제규격인 GEIA-STD-0007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수리온 기반 수출형 헬기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그 자질을 인정받아 방산분야 수출사업에서 군수지원분석(LSA) 전문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 (2) 군수지원분석(LSA)

군수지원분석(LSA: Logistics Support Analysis)은 무기체계의 전 수명주기 간에 군수지원 요소를 확인, 정의, 분석, 정량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입니다. 군수지원분석은 무기체계 획득관리 전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군수지원분석 과정에서 체계의 배치, 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군수지원 요소가 식별됩니다. 군수지원분석 결과자료는 SOLOMON Tool에 입력/처리되어 표준화된 DB 자료로 제공됩니다. 최근 당사는 방위사업청의 연구 과제인 [군수지원분석(LSA) 방법 선진화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하였고,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군수지원분석체계 고도화 사업]의 수행업체로 참여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스펙을 기반으로 하는 ILS 표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① 군수지원분석 방법 선진화 연구

기준에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군수지원분석(LSA)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무지침서(2015. 7.)] “ 제4장 군수지원분석 업무” 는 이미 폐지된 규격인 MIL-STD-1388-1A 및 MIL-STD-1388-2B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무기체계 국제 입찰 시, 최신 표준국제규격을 적용한 PSA(Product Support Analysis)를 수행하고 “ PSA-P, PSA 결과, LPD(Logistics Product Data)” 의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최신 표준 국제규격에 맞게 PSA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군수지원분석(LSA)방법 선진화 연구] 수행을 통해 미 국방성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최신 표준 국제규격과 표준서 등을 심층 연구하고, 방위사업청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무지침서] “ 제4장 군수지원분석 업무” 등의 국내 분석방법 관련 지침과의 비교 및 분석은 물론 적용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② 군수지원분석체계 고도화 사업

[군수지원분석체계 고도화] 사업 또한 당사에서 진행하는 방위사업청 발주 과제로서, [군수지원분석(LSA) 방법 선진화 연구] 결과와 최신 LSA 규격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에서 채택한 GEIA-STD-0007과 S-Series 등의 국제 표준을 지원하는 LSA 체계를 구축하여 무기체계 수명주기 간, LSA 간, LSA와 IETM 간 데이터를 교환하고 제공하는 통합된 ILS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 ILS사업부의 역사는 짧지만 변화의 시기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여 변화하는 ILS 업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3) 기술교범 개발 사업

기술교범팀은 개발장비 분석, 기술도해 생산, 기술교범 전문 편집을 통해 국내외 방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방산분야 기술교범 개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육해공군 방산사업을 수행하므로 기술적 면에서 메이저 ILS 전문업체와 비슷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사와 차이를 두고 향후 ILS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교범에 대한 국제규격 S1000D를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여 수리온에 기반한 다수의 헬기사업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무기체계 개발에는 지난 30년간 군에서 사용된 국방규격에서 벗어나 방위사업청 주도로 S1000D와 같은 국제 규격에 맞는 기술교범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당사는 민수 항공기 사업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속적인 국제규격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규격을 적용한 기술교범 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위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4) 전자식기술교범(IETM) 개발 사업

전자식기술교범 개발의 경우, 기존 방산규격(MIL-SPEC)을 적용한 육·해군 전용 K AIS S/W와 솔트웍스에서 개발한 공군용 eXPIS S/W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IETM은 국방 분야에서 15년 이상 운용하고 있지만 국제규격에는 상호호환이 불가하여 S1000D 기반의 새로운 IETM S/W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S1000D기반의 IETM S/W 개발 사업을 수주해 수출형 헬기뿐만 아니라 기타 민수헬기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해양경찰헬기 및 소형민수헬기 지원체계요소 개발 사업에서 S1000D 기반의 IETM SW를 개발하여 IETM을 제작하였고, 현재 민수/관용헬기 사업의 노하우를 S1000D 기반 KF-21 기술교범의 CSDB 구축에 적용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기술번역사업부

당사는 2004년, 기술번역 업무로 사업연혁을 시작하여 ILS사업부가 설립된 2015년까지 단일사업부로 타임기술을 이끌었습니다. ILS사업 대비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업 초부터 무기체계 기술번역 경력자들을 대거 영입하여 지난 15년 동안 국내외의 크고 작은 번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레퍼런스를 누적해왔으며, 동종 업계내에서 20년 이상의 방산분야 기술번역 경력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경쟁사 국방 기술번역 적합성 여부 ]

업체명	국방부 보안인가 획득 여부	기술번역 별도 사업부 보유 여부
타임기술	○	○
한성 S&I	○	×
에이트원	○	×
IT 사이언스	○	×
SDL	×	○
한샘 이지유저가이드	×	○

특히, T-50 항공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용 기술교범 영문화 개발 실적은 당사 기술번역사업부의 중요 이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 사업을 계기로 당사가 방산분야 기술번역 전문업체로서 대외적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술번역사업부는 국내 개발 무기체계의 기술교범 번역 및 수출용 교범 영문화와 문서편집 업무를 수행합니다. ILS 업무의 일환으로 번역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나, 당사의 기술번역사업부는 독립적으로 번역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납품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년 간의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동시번역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out-put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항공기 수출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임기술은 SDL Groupshare 서버를 통해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필요한 용어 및 번역 메모리를 공유하여 동시에 번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동시번역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기술번역 품질 향상(용어 통일, 문장 통일, 작업기간 단축, 공정 단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 인공지능망(AI) 기반 기계번역 기술을 도입할 경우, 당사에서 보유한 기술교범 번역 및 수출 사업의 방대한 번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번역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술번역 사업 점유율 : ~ 2021년 ]

KAI 등록 업체	번역 진행사업	번역 점유율 (번역페이지기준)

타임기술	T-50 이라크 수출 교범(70,000 페이지) FA-50 필리핀 수출 교범(70,000 페이지) T-50 인도네시아 수출 교범(70,000 페이지) T-50 태국 수출 교범(70,000 페이지) FA-50 창정비 교범(5,000 페이지) T-50 창정비 교범(5,000 페이지) KF-X 기술교범 번역(23,000 페이지) KF-X 항공저자시스템 통합 및 지상 시험평가 영문절차서 번역(20,000 페이지)	66%
한성 S&I	KT-1 세네갈, 터키, 인도네시아, 페루 수출 교범(100,000 페이지)	20%
티에스아이	진행사업 없음	0%
에이트원	T-50 후속판 교범(70,000 페이지)	14%

### 3) VR/AR/MR사업부

당사의 VR/AR/MR 디지털사업부는 기획 전문가, 시스템개발팀, 콘텐츠 연구개발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 및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훈련 요소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기 개발된 전자식교보재(CBT) 이론학습용 콘텐츠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 VR 플랫폼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VR 기반 정비지원 및 정비교육 시스템과 연구개발 중인 클라우드 기반 VR 플랫폼을 통합하여 국방 분야 정비지원 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 [ 군수 분야 교육/훈련 전자식 교재 개발 형태 ]

구분	용도	개발 구성	주요 라인업	
			운영	개발업체
전자식		무장체계 CBT	함수부	에이트원
		통합 양강마스트 CBT	장보고함	에이트원
		K-2 전차 CBT	육군	ITScience
		신형화생방정찰차 CBT	육군	ITScience

교보재 (CBT)	이론교육훈련	K21 보병전투장갑차 CBT	육군	PartDB
		중고도 정찰형 무인항공기 CBT	육군	PartDB
		K21 보병전투장갑차 CBT	육군	PartDB
		중고도 정찰형 무인항공기 CBT	공군	한길소프트웨어
가상·증강 현실 교육훈련체계	이론/실습 교육훈련	가상현실(VR) 교육훈련체계 증강현실(AR) 정비지원체계	육군/공군	타임기술/프론티스

출처 : 2018년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발주현황 근거

현재 국방 분야에서는 종합군수지원을 기반으로 한 전자식교보재(CBT)에 탑재된 3D 애니메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대기업 종합군수업체 주관으로 협력사인 티에스아이, 한성S&I, 한길C&C, 프린테크 등 소수업체가 완성형 전자식교보재(CBT)를 개발하여 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식교보재(CBT)는 군 요구사항 및 무기체계 특성상 개발범위가 일관성이 없고 개발 기술도 통일성이 없어 실제 운용상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상현실(VR) 콘텐츠는 현재로서는 경쟁사가 없는 새로운 분야이므로, 군 소요 제기시 당사는 그동안 확보된 기술력 및 인프라를 토대로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4)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된 재무제표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 4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타임기술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316,732,836	1,394,341,534
(1) 당좌자산	1,316,732,836	1,394,341,5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698,011,609	587,648,357
2. 매출채권	570,922,101	751,904,540
대손충당금	(1,815,000)	(3,408,638)
3. 선급비용	15,362,610	18,679,327
4. 미수법인세환급액	53,860	20,300
5. 단기대여금	110,147,656	123,147,648
대손충당금	(75,950,000)	(83,650,000)
II. 비유동자산	2,417,463,388	2,300,203,375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1) 유형자산		1,952,529,151		1,772,074,815
1. 토지	1,158,632,000		956,466,900	
2. 건물	694,374,400		694,374,400	
감가상각누계액	(57,862,283)		(40,502,923)	
3. 기계장치	39,338,288		4,338,288	
감가상각누계액	(9,587,288)		(4,337,288)	
4. 차량운반구	55,210,545		55,210,545	
감가상각누계액	(30,922,810)		(19,880,701)	
5. 비품	46,331,299		38,517,425	
감가상각누계액	(35,001,100)		(29,193,279)	
6. 시설장치	132,370,633		132,370,633	
감가상각누계액	(40,354,533)		(15,289,185)	
(2) 무형자산		227,080,062		295,274,385
1. 영업권	116,666,667		186,666,667	
2. 소프트웨어	110,413,395		108,607,718	
(3) 기타비유동자산		237,854,175		232,854,175
1. 임차보증금	17,828,800		12,828,800	
2. 기타보증금	1,105,375		1,105,375	
3. 회원권	218,920,000		218,920,000	
자 산 총 계		3,734,196,224		3,694,544,909
부 채				
I. 유동부채		2,759,386,193		3,034,747,624
1. 매입채무	-		37,280,100	
2. 미지급금	187,475,801		150,088,367	
3. 미지급비용	224,931,642		130,711,325	
4. 예수금	26,591,206		22,906,436	
5. 부가세예수금	103,312,562		92,407,471	
6. 공사선수금	247,784,445		594,163,061	
7. 단기차입금	1,889,000,000		1,900,000,000	
8. 유동성장기부채	70,680,000		88,730,000	
9. 공사손실충당부채	9,610,537		18,460,864	
II. 비유동부채		97,106,322		123,590,000
1. 장기차입금	52,630,000		123,590,000	
2. 이연법인세부채	44,476,322		-	
부 채 총 계		2,856,492,515		3,158,337,624
자 본				
I. 자본금		1,076,050,500		1,061,050,500
1. 보통주자본금	1,076,050,500		1,061,050,500	
II. 자본잉여금		1,397,193,900		1,397,193,900
1. 주식발행초과금	1,397,193,900		1,397,193,900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7,688,778		-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1. 재평가이익	157,688,778		-	
IV. 결손금		(1,753,229,469)		(1,922,037,115)
1. 미처리결손금	(1,753,229,469)		(1,922,037,115)	
자 본 총 계		877,703,709		536,207,28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734,196,224		3,694,544,909

손 익 계 산 서

제 4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타임기술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I. 매출액		3,109,764,477		2,714,283,472
1. 용역매출	3,109,764,477		2,714,283,472	
II. 매출원가		1,958,551,017		1,877,908,718
1. 용역매출원가	1,958,551,017		1,877,908,718	
III. 매출총이익		1,151,213,460		836,374,754
IV. 판매비와관리비		870,865,569		760,475,128
1. 급여	428,935,850		365,187,980	
2. 퇴직급여	22,606,086		34,925,293	
3. 복리후생비	37,795,489		27,194,525	
4. 여비교통비	21,015,970		16,228,612	
5. 접대비	48,324,790		50,833,355	
6. 통신비	7,022,335		4,700,805	
7. 세금과공과	13,876,700		23,134,730	
8. 감가상각비	20,155,889		25,343,578	
9. 지급임차료	10,363,632		15,320,233	
10. 수선비	-		11,534,910	
11. 보험료	19,125,816		22,002,140	
12. 차량유지비	10,311,500		2,787,746	
13. 운반비	125,130		34,600	
14. 교육훈련비	1,000,000		150,000	
15. 도서인쇄비	2,780,000		589,200	
16. 소모품비	1,459,657		4,994,858	
17. 지급수수료	139,461,357		67,017,430	
18. 대손상각비(환입)	(1,593,638)		(842,188)	
19. 건물관리비	15,598,550		15,011,680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20. 무형자산상각비	72,500,456		74,325,641	
V. 영업이익		280,347,891		75,899,626
VI. 영업외수익		8,082,434		11,663,298
1. 이자수익	359,830		145,596	
2.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7,700,000		8,400,000	
3. 잡이익	22,604		3,117,702	
VII. 영업외비용		119,622,679		117,212,220
1. 이자비용	82,990,658		82,854,276	
2. 외환차손	-		52,746	
3. 기부금	30,000,000		25,000,00	
4. 매출채권처분손실	-		910,919	
5. 유형자산처분손실	-		1,208,334	
6. 잡손실	6,632,021		7,185,945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68,807,646		(29,649,296)
IX. 법인세비용		-		-
X. 당기순이익(손실)		168,807,646		(29,649,296)
XI. 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79		(15)
2. 희석주당순이익		77		(15)

### 결손금처분계산서(안)

제 4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I. 미처리결손금		(1,753,229,469)		(1,922,037,115)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922,037,115)		(1,892,388,819)	
2. 당기순이익(손실)	168,807,646		(29,648,296)	
II. 결손금처리액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753,229,469)		(1,922,037,115)

- 재무제표 주석 : 2022년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timett.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명 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타임기술(영문 TIME Technical Support. ltd)라고 한다.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 주식회사 타임기술”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TIME Technical Support. ltd라 표기 한다.	제목 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제목 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8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등의 전자등록】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및 주식등의 전자등록】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용 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8조의2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 주식】	제8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목 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8조의3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 주식】	제8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목 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8조의4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 주식】	제8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목 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1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목 및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12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당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44조2 제1항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12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목 및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14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목 및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17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 및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신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목 및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20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에 조항개정에 따른 항목 개정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3.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4.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목 및 내용개정 &lt;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gt;</p>
<p>제23조 【의 장】</p> <p>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p> <p>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 【의 장】</p> <p>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p> <p>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정관에 조항개정에 따른 항목 개정을</p>
<p>제24조 【이사의 직무】</p> <p>1.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lt;삭제&gt;</p>	<p>제 34조 1항으로 조항이동으로 인한 내용 삭제</p>
<p>&lt;신설&gt;</p>	<p>제24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p> <p>1.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lt;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gt;</p>
<p>제28조 【의결권의 행사】</p> <p>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조항삭제</p>
<p>제29조 【주주총회 결의방법】</p>	<p>제29조 【주주총회 결의방법】</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34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3월내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및 의무】 1.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 및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37조 【이사회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 동의로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 【이사회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4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
제42조 【감사의 수와 선임】 1.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	제42조 【감사의 수와 선임】 1.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3.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5.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	내용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6.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내용 반영 및 신설&gt;</p>
<p>제45조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제45조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 제3항 및 제41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내용개정 &lt;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gt;</p>
<p>제7장 계산</p>	<p>제7장 회 계</p>	<p>제목개정 &lt;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gt;</p>
<p>제4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p>	<p>4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p> <p>②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p> <p>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6.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7.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5.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7.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8.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내용개정 &lt;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gt;</p>
<p><b>제52조 【이익배당】</b></p> <p>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3.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9조의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p><b>제52조 【이익배당】</b></p> <p>1.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3.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9조의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p>내용개정 &lt;법규 개정에 따른 표준정관 개정 내용 반영 및 신설&gt;</p>
<신설>	<p>부 칙</p> <p>이 정관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개정 일자 표시를 위한 부칙 신설</p>
<신설>	<p>부 칙</p> <p>이 정관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개정 일자 표시를 위한 부칙 신설</p>
<신설>	<p>부 칙</p> <p>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개정 일자 표시를 위한 부칙 신설</p>



※ 기타 참고사항

상법 등 관계법령을 반영한 표준정관으로 개정하고자 2022년 2월 14일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결의하였고, 2022년 3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4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주양호	1974.01.24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본인	-
권광현	1957.10.05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없음	-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주양호	(주)타임기술 대표이사	2012년~2017년 2012년 2004년~현재	창원대 회계학과 겸임 교수 창원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주) 타임기술 대표이사	없음
권광현	창원대학교 교수	1983년~1989년 2008년~2010년 2016년~2018년 2015년~현재 2016년~현재 1992년~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장 창원대학교 학생처장 한국국제회계학회 명예회장 한국산업경제학회 고문 창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주양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권광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최고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

-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 수행하고자 함.

2. 회사의 이익 보호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

3.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특히 상근이사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것임.

4.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당사와의 거래, 경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당사 사외이사 재직 경험에 따른 독립성과 책임성, 윤리의식 등 고려하여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함.

## 확인서

##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의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보고자 : 주 양 효  (서명 또는 날인)

[참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3-15조(참고서류)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후보자인지 여부
-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 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 수행계획

사내이사 확인서



##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보고자 : 권 광 현 (서명 또는 날인)

[참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제3-15조(참고서류)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 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 수행계획

사외이사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명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0,000,000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명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12,833,350원
최고한도액	4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

(전 기)

감사의 수	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000,000
최고한도액	10,000,0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 정관 제10의 2항에 의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사기진작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2월 14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전OO	상무이사	상무이사	보통주	50,000
총( 1 )명				총( 50,000 )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 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발행교부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5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부여일	

구 분	내 용	비 고
	<p>전일부터 과거2개월, 과거1개월, 과거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p> <p>2)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행사하되 총 행사 가능기간은 5년 이내로 함.</p>	
기타 조건의 개요	기타 사항은 부여계약서와 당사 정관 및 관계 법령에 의함	

※ 기타 참고사항  
 상기 해당사항 없음.



##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2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의거하여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2022년 03월 21일)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http://timett.co.kr>

※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주주총회장 입장 전 체온계 등을 이용한 발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발열 등 감염증상이 의심이 되거나 보건용 마스크 미착용시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일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정부 방침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주주총회 당일 입장 관련 규정도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